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강정애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보훈특별고용 선정 관련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마련 등 취업 및 교육 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(제52조제2항)

나. 채용신체검사 관련 규정 개정 등 취업 및 교육 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 개선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6조제1호 중 “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”을 “일반군무원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”을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”으로, “일반직공무원을”을 “일반직공무원과 「군무원인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을”로 한다.

제5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4조제1항 중 “종합병원”을 “종합병원 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정하는 의료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 8 제1호 연 지급액란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2제1호”를 “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3제1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6조(취업지원의 신청) 법 제36조	제46조(취업지원의 신청) -----			
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	-----			
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	-----			
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	-----			
하나를 선택하여 이력서를 첨부	-----			
한 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	-----			
하여야 한다.	-----.			
1. 법 제37조에 따라 일반직공	1. -----			
무원 및 <u>관리운영직군에 속하</u>	----- <u>일반군무원</u> -----			
<u>는 일반군무원</u> (이하 “일반직	-----			
공무원등”이라 한다) 특별채	-----			
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	-----			
취업지원 대상자: 일반직공무	-----			
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	-----			
신청서	-----			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			
제47조(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	제47조(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			
원 등)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	원 등) ① -----			
에서 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</u>	----- 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</u>			
<u>반직공무원</u> ”이란 「국가유공자	<u>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</u> -----			
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	-----			
시행령」 별표 8의2에 따른 <u>일</u>	----- <u>일</u>			
<u>반직공무원을</u> 말한다.	<u>반직공무원과 「군무원인사법</u>			
	<u>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관리운</u>			

② (생 략) 제52조(보훈특별고용 등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 ③ ~ ⑥ (생 략) 제54조(채용신체검사의 판정) ① 법 제43조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은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<u>종합병원</u>에서 한다. ② (생 략)	<u>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을</u> 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52조(보훈특별고용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 ③ ~ ⑥ (현행과 같음) 제54조(채용신체검사의 판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종합병원</u> <u>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정하는 의료기관</u>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651